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910호

2. 발 의 자 : 김용연 의원

3. 발의일자 : 2020. 10. 15.

4. 회부일자 : 2020. 10. 26.

Ⅱ. 제안이유

○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 생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- 1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2.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교육감 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3.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한 계획 수립과 그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4. 공항소음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,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(안 제5조 ~ 제8조).

Ⅳ. 참고사항

- 1. 관계법령 :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,
 -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, 「학교보건법」
- 2. 예산조치 : 별도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
- 3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Ⅴ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20년 10월 15일 김용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910호로 발의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항공 소음 대책 및 체계적인 지원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 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

- 공항주변 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운항에 따라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·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익적 목적 때문에 이를 감내해왔으나, 항공기의 특성상 소음의 크기가 다른 소음보다 크고 그 영향을 미치는 생활반경 또한 광범위하여 이에 대한 피해 방지 및 보상 등 대책마련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.
-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공항소음방지법', 법률 제10161호, 2010.3.22., 제정)을 제정하여 공항 주변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소음방지 및 지원사업 등을 시행해 왔습니다.

○ 한편 서울시교육청도 공항 주변에 위치하여 항공소음으로 인해 피해 를 받는 학교에 대하여 '공항소음방지법'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로부 터¹) 냉난방기기, 방음창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.

[표-1] 공항소음대책지역 학교 지원 계획2)

(단위 : 교, 백만원)

구분	2020		2021		2022		2023		2024		2025		합계	
	학교수	지원액	학교수	지원액	학교수	지원액	학교수	지원액	학교수	지원액	학교수	지원액	학교수	지원액
송왕사	12	5,571	11	3,447	- 8	2,355	- 5	1,334	- 2	158	1	310	- 39	13,173
교육청		2,480	11	3,896		1,512		1,556		16		116		9,575

○ 그러나 '공항소음방지법'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서는 소음 대책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대한 냉난방시설의 설치 및 전기료 지 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, 피해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및 학생 지원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,

동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피해학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체계적인 지원 계획의 수립을 통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나. 주요 조문별 검토

- 1) 조례안의 구성
- 동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1조부터 제3조 까지는 조례안의 목적, 정의,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,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는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와 시설 설치의

^{1) &#}x27;학교냉방시설 설치·지원에 관한 협약서',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, 서울시교육감,(2019.8.)

^{2) &#}x27;항공소음피해학교 냉난방시설 지원 중장기 추진계획 변경(안)',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-3920(2020.4.9.)

범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「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, 조례 구 성 측면에 있어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2) 시설설치에 관한 의견(안 제6조)
- 안 제6조는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냉방관련시설과 공기정화설비, 그리고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(제1항), 공항소음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항소음 피해학교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(제2항).
- 이와 같은 시설물은 항공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한다는 측면 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
- 다만 공항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내 방음시설의 설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, 냉방이나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는 방음시설의 설치와 동시 또는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O 더욱이 '공항소음방지법' 제8조제1항³⁾에서는 냉방시설과 방음시설을

³⁾ 제8조(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)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(이하 "소음대책사업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^{1.}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

^{2.}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(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)

^{3.} 학교 및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(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)

^{4.}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

^{5.} 삭제 <2015. 12. 31.>

^{6.}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

^{7.} 그 밖에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설치하는 사업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)에서 도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방음시설의 설치를 냉방시설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[표-2]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5)

구 역			소음영향도 (WECPNL)	소음대책사업	비고			
	제1종구역		95이상					
소음 대책 지역	제2종구역		90 ~ 95미만	.주택방음.냉방시설 .학교방음.냉방시설	- 양천구(신월1,2,3,4,5,6,7동, 신정1,3,4,7 일부지역			
	제3종 구역	"가"지구	85 ~ 90미만	.공영방송수신료 지원	-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	
		"나"지구	80 ~85미만	.전기요금(학교, 주민주거) .주민지원사업 지원	일부지역 - 구로구(가리봉동, 개봉1,2동, 고척1,2동,			
		"다"지구	75 ~80미만		구로1,2,3,4동) 일부지역 - 금천구(가산동, 독산동) 일부지역			
	인근지	역	70 ~ 75미만	.주민지원사업 지원				

○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, 안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규 정하고 있는 시설의 유형에 방음시설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동 조 례안의 제정목적을 달성하는데 보다 부합할 것이며.

이는 공항소음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우선적 조 치가 된다는 점에서 안 제6조제1항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 니다.

⁴⁾ 제3조(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)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.

^{1.} 공항시설관리자(이하 "시설관리자"라 한다)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(이하 "사업시행자"라 한다)는 공항별 공항소음대책사업 물량과 공항소음대책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사업비를 배분하고 이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한다.

^{2.}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. <u>다만, 학교에 대한</u>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와 관계없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.

^{3.} 각 공항별 방음시설의 설치는 냉방시설의 설치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^{4.} 공영방송 수신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「방송법」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 하고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년 지원한다.

^{5.} 냉방시설 전기료는 학교 및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하여 4개월만 지원한다.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지원한다.

⁵⁾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,(2017.6.29.).

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.

- 한편 동 조례안 제6조제2항은 공항소음 피해학교 외의 학교에 안 제1항과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'공항소음 피해학교 외의 학교'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대상학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
- 따라서 '공항소음 피해학교 외의 학교'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, 동 조례안 3조에서 '공항소음 피 해학교'를 '공항소음방지법'에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'소음대책지 역('공항소음방지법'제5조제1항6))'과 '소음대책 인근지역('공항소음 방지법'제18조제2항7))'을 모두 포함하는 곳에 소재하는 학교로 규 정하고 있는바, 이를 고려한다하더라도 안 제6조제2항의 '공항소음 피해학교 외의 학교'는 그 범위를 특정화할 수 없습니다.

[표-3] 공항 소음대책지역 학교

구 역	자치구		계				
T Ä	시시ㅜ	유	초	중	고	/ 1I	
	구로구	1	4	2	2	9	
소음대책지역	양천구	9	8	6	7	30	
	소계	10	12	8	9	39	
	구로구	9	5	2	2	18	
	금천구	1	2	1	-	4	
인근지역	강서구	4	1	2	-	7	
	양천구	8	6	5	-	19	
	소계	22	14	10	2	48	
합계		32	26	18	11	87	

⁶⁾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^{1. &}quot;공항소음"이란 공항에 이륙 · 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.

^{2. &}quot;소음대책지역"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.

제5조(소음대책지역의 지정·고시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,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·고시하여야 한다.

⁷⁾ 제18조(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(이하 "지원사업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(이하 "소음대책 인근지역"이라 한다)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

- 따라서 동 조례안이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학교만을 그 대상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, 안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로 사료됩니다.
- 더불어 현재 안 제3조 책무규정에 정의되어 있는 '공항소음 피해학 교'를 안 제2조 정의에 규정하는 것이 법적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측 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.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안 제6조제2항의 '공항소음 피해학교 외의 학교'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6017,2020.11.10.).
- 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 한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